

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13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와 관련 포괄적·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, 구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골자

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제한사유중 포괄적·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개범위를 명확히 함.(안 제5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주민공개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·정책에 관한 사항. 2.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·정책에 관한 사항. 3. 시설공사, 물품의 제조 및 구매,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. 4.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. 	<p>제5조(주민공개의 제한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. 2. ----- ----. 3. ----- -----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삭제></u></p>